

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 조례제정안

의안번호	273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12. 19

제 출 자 : 사 하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이 개정('94. 12. 2 국회의결)되어 “직할시”의 명칭이 “광역시”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조례·규칙·훈령·예규 중 “부산직할시”로 되어 있는 자구를 “부산광역시”로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☐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조례·규칙·훈령·예규 중 “부산직할시”의 자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.

- 부산직할시사하구 → 부산광역시사하구
- 부산직할시사하구청장 →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
-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→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
-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장 →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장
- 부산직할시 → 부산광역시
- 부산직할시장 → 부산광역시장

3. 관련법령

지방자치법 제2조, 제3조

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 조례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

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·규칙·훈령·예규 중 “부산직할시사하구”를 “부산광역시사하구”로, “부산직할시사하구청장”을 “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”으로, “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”를 “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”로, “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장”을 “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장”으로, “부산직할시”를 “부산광역시”로, “부산직할시장”을 “부산광역시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